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40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허종식·김교흥·김정호

노종면 • 모경종 • 박성준

서영교 • 유동수 • 윤준병

이재관 · 정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항만공사, 공공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 등은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계획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하위법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안자 또는 공모에 응모한 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을 위한 조건 등이 포함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대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임에도 개발 계획의 제안·공모에 따른 계획안이 개발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개발 계획의 수립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며, 협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부실한 타당성 검토로 인하여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계획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된다고 규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토지를 매도청구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인정 범위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범위가 정해지므로 그 개념이 중요하나 현행법은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취득세나 각종 보험료와 같은부대비 등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으므로 총사업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사업계획 승

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총사업비를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 나.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제안 또는 공모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한 후 제안자 또는 공모에 응한 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7조 삭제 및 안 제50조).
- 다.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및 사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며, 매도청구로 취득한토지를 취득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총사업비"란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준 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6조제1항 후단 중 "변경"을 "변경(제4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토지소유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2. 토지소유자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제안·공모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개 발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항만배후 단지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제안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안자"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공모에 응모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응모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 · 기간 및 방법
-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이용 및 처

분 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 4.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5. 재원조달계획
-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7. 제54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평가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해양수산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자 또는 응모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제안·공모, 검토·평가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제5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
- 2.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 3. 총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4.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 5.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범위 등의 적정성
- 6.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 등의 적정성
- 7.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제62조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계획의 적정성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항만시설의 귀속 범위의 조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이행 등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제2항제6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가 매도청구 대상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할 계획이 없거나 취득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해당 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

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⑦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제6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인을 신청한 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 ⑧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⑨ 제8항에 따른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 한다.
-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51조제1

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 니한 경우

-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51조제2항제7호 중 "조성토지"를 "조성토지(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3조제1항제1호라목 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제4항"으로,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마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8. 제50조제2항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내용 을 위반한 경우
- 9.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 또는"을 "승인,"으로, "사용허가를"을 "사용허가, 제50조제2항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제50조제2항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승인의 내용
- 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제100조제2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의2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로 한다.

제108조제2호 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으로 한다.

제109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0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의 승인 조건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50조의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 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2. "총사업비"란 항만개발사
	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
	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
	으로 해당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
	하여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①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5조에 따	
라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	
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	
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항을 <u>변경</u> 하려는 경우에도 또	변경(제4항에 따라 변경하는

한 같다.

- ② · ③ (생 략)
- ④ <u>토지소유자</u>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제3항</u>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신 설>

<신 설>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①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 범위
에서 또는 종합계획이 수립되
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
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경우를 포함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자</u> 는
<u>제1항 및 제3항</u>
<u>.</u>
1.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u>는 자</u>
<u>2. 토지소유자</u>
<u><삭 제></u>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 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 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 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 여 선정된 안을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 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절 차 및 공모 절차 등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 정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 공사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u>관</u>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기업

획의 제안 · 공모 및 사업시행 예정자의 지정)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적합 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 공사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에 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 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 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2종 항 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 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 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 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

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 고 효율적인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 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을 공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계획을 제안한 자(이 하 이 조에서 "제안자"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 지개발사업계획 공모에 응모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응모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 오
-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 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착 수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승인이 취소된 경우
-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 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이 포함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 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및 면적
 -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 행 주체·기간 및 방법
 -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제62조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이용 및 처분 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 4.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 준에 관한 사항
 - 5. 재원조달계획
 -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7. 제54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 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항만배후단지개

<신 설>

발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평가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에 따라 구성된 해양수산부 소 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자 또는 응모 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계획의 제안·공모, 검토· 평가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사 업시행예정자의 지정 절차·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계획의 승인 등) ① 제50조제4 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50조제3 항에 따라 제출한 항만배후단 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0조제 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항만배후

<u>단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u> 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u>하여야 한다.</u>

-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
- 2.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 3. 총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집 행계획의 적정성
- 4.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 5.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범위 등의 적정성
- 6.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 등의 적정성
- 7.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제62 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계획의 적 정성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

획을 승인하는 경우 항만시설의 귀속 범위의 조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이행 등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 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제2 항제6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예정자가 매도청구 대상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할 계획이 없거나 취득 목적에 따 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 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 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①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 획을 승인한 경우(제6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인을 신청한 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 ⑧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항 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8항에 따른 변경승인에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 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 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 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 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 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 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 지 아니한 경우
- 3.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 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 인이 취소된 경우
-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 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시계획의 승인 등) ① (생 략)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 |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 시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라 한다)에는 항만배후단지개 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 1. ~ 6. (생략)
-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생략)

③ ~ ⑦ (생 략)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 지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같음)
②
1. ~ 6. (현행과 같음)
7. 조성토지(제62조제1항에 따
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
여야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8.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이 경
우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
여야 하는 토지의 범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를
<u> </u>

② (생략)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가. ~ 다. (생략)라. <u>제50조제1항</u>에 따른 <u>사업</u>시행자의 지정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1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제50조제4항사업시</u>
<u>행예정자</u>

<신 설>

마. • 바. (생 략)

2. ~ 7. (생 략) <u><신 설></u>

<신 설>

8. (생략) ②·③(생략)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서울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수 있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의 승인
<u>바.•사.</u> (현행 마목 및 바목
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8. 제50조제2항제1항에 따른 항
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
인 내용을 위반한 경우
9.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내
용을 위반한 경우
<u>10.</u>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u>사용허가, 제50조제2항제1항</u>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제51조제1항

마.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1. ~ 3. (생략)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 저 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 가 ·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승인 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 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 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 라. (생 략)

<신 설>

에 따른 항만배우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1. ~ 3. (현행과 같음)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
1
1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50조제2항제1항에 따른

<신 설>

- 2.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지시·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제50조제3항</u>에 따른 사업시 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 소
 - 3. (생략)
 -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
승인의 내용
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청문)
1. (현행과 같음)
2. <u>제50</u> 조의2제 <u>10항</u>
3. (현행과 같음)
4
<u>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u>
획 승인의 취소

-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 5. (생략)

-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7. (생 략) <u><신</u> 설>

8. ~ 10. (생략)

제108조(벌칙)
1. (현행과 같음)
2
<u>제50</u> 조의2제1항 또는
제8항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
인
— 3. ~ 5. (현행과 같음)
제110조(벌칙)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50조의2제3항 또는 제4
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을 위반
한 자
<u>선 수</u> 8. ~ 10. (현행과 같음)